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4. 21.] [대통령령 제36269호, 2026. 4. 21.,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집행의 투명성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종전에 지침으로 운영하던 재활용부과금의 면제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28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징수를 면제하도록 정하는 한편,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분할납부 횟수를 연 4회로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그 횟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 대통령령 제36269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후단 중 "분기별로 나누어"를 "나누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분기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로 한다.

제28조의4를 제28조의5로 하고, 제2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4(재활용부과금의 징수 예외) 법 제19조제1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한다.

제48조제3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의 요청

별표 3의2 제4호의 세부 내용란 중 "제1호에 따른 안전망"을 "제3호에 따른 안전망"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더목의 위반행위란 1) 및 2)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의2제2항"을 "법 제25조의2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